

【사건번호 2022-021】 소방청 구급활동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소방청
- 대상 공공데이터: 구급활동데이터
- 신청목적: 학술연구

2.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구급활동현황데이터* 및 구급차량출동데이터**(이하 '신청 데이터'라 함)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2010~2021년 전국 구급활동현황 41개 항목(집계연도, 시군구명(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코드, 출동소방서, 출동안전센터, 신고년월일, 신고시각, 접수경로, 관할구분, 출동년월일, 출동시각, 현장도착년월일, 현장도착시각, 현장과의 거리, 귀소년월일, 귀소시각, 환자 연령, 환자성별, 긴급구조시, 긴급구조구, 긴급구조동, 긴급구조리, 외국인여부, 국적, 구급처종명, 환자증상1, 환자증상2, 질병외_교통사고, 질병외_사고부상, 질병외_비외상성 손상, 의식상태, 구급대원1_자격, 구급대원2_자격, 운전요원_자격, 구급사고유형, 규모, 출동차수, 출동인원수, 병원도착시간, 병원과의 거리, 이송병원명

** 2010~2021년 전국 구급차량출동데이터 6개항목(소방서명, 안전센터명, 기준연도, 기준월, 구급차수, 구급대원수

3. 사실조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활동을 하게 하며(제13조),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제22조)
- 구급활동상황의 경우, 구급대원이 119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에 이를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도록 하며(시행규칙 제18조), 소방청 담당자에 따르면 전국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급활동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소방청은 2009년 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구축, 2012년 해당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각 소방본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급활동데이터 관리 및 통계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데이터 비표준화, 정합성 오류, 데이터 값 오류 등의 문제가 있어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 품질진단·개선 및 개방DB 구축 등을 수행하였음(공공데이터 개방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중 발췌)

- 이 사건 데이터 중 구급활동현황 데이터 관련, 피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20개 항목을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수도권 데이터의 경우 파일데이터로도 제공하고 있음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데이터에 대한 제공불가(또는 일부제공)를 주장할 뿐, 미보유를 주장하는 항목은 없음

- 이 사건 데이터 중 구급차량 데이터 관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는 몇백 만건의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하였으나, * 구급차는 '장비관리시스템', 구급대원은 '인사정보시스템'에서 관리
 - 신청인이 신청데이터의 범위를 조정하였고(연단위 통계도 활용가능하다고 답변) 피신청인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서 '구급대원 및 구급차량'을 포함한 구급자원현황 통계를 지역별로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연간 통계를 추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를 의미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119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 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119법 시행규칙에서 서식에서 정하는 항목을 수집한 데이터로서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① 또는 ②를 가명처리한 정보 중 하나를 의미(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대법원 2016.3.10.선고 2012다105482판결)
 -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목)는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되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수 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 그 판단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대법원 2003.12.12.선고 2003두8050판결 등)
 -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는 정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2020-012사건(자동차 차대번호), 2021-001사건(가축이력번호)), 개인정보 삭제, 치환 등 비식별처리하는 경우(2018-012사건, 소방청 화재발생지 및 개요), 신청목적 및 활용방안을 고려하면 데이터 제공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2020-020사건, 승차권유효성검증데이터), 연구목적으로 피신청기관 내 폐쇄된 환경에서만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2019-031사건, 병무청 편평족 X-ray데이터) 등의 사안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함
 - 또한 이 사건 데이터 관련 2021-028사건에서는 구급활동현황데이터 32개

항목을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제3자 유출금지, 목적달성 시 파기를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조정한 바 있음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다음의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 2010~2021년 전국 구급활동현황 42개 항목(집계연도, 시도명, 시군구명,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재난번호, 재난번호_순번, 출동소방서, 출동안전센터_지역대, 신고년월일, 신고시각, 접수경로, 관할구분, 현장도착소요시간(분), 현장활동소요시간(분), 현장과의 거리, 병원도착소요시간(분), 귀소소요시간(분), 환자연령, 환자성별, 긴급구조시, 긴급구조구, 외국인여부, 구급처증명, 환자증상1, 환자증상2, 질병외_교통사고, 질병외_사고부상, 질병외_비외상성손상, 의식상태, 구급대원1_자격, 구급대원2_자격, 운전요원_자격, 환자발생유형, 규모, 출동차수, 출동인원수, 병원과의 거리, 이송분류, 차량번호, 소방서안전센터 출동건수(월기준), 이송병원명
- 상기 제공대상 데이터 42개 항목 중, 신고년월일의 경우 일 단위 정보를 제외하고, 신고시각의 경우 분 단위 이하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환자 연령의 경우 5세 단위로 범주화하여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제공대상 데이터를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날(이하 '조정일'이라 함)로부터 30일 이내 제공한다.
-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또한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
- 이 사건 관련 법령, 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 기타 사실조사결과 등을 고려하면, 신청 데이터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당사자가 제공에 합의한 상기 데이터 42개 항목의 경우, 신청 데이터 대비 신고 일자 및 분 단위 이하 시각정보와 동 단위 이하 위치정보 등이 제외되고 환자연령이 범주화되어 개인식별 위험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 향후 기술의 발전 등으로 해당 데이터의 식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서 공익 등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이 연구(응급의료체계 관련 학술연구)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한편, 상기 데이터 42개 항목 중 재난번호, 재난번호 순번, 소요시간(현장도착, 현장활동, 병원도착, 귀소), 차량번호, 출동건수 등 일부 데이터는 신청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청 데이터 중 제공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대체하여 제공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o 이 사건 조정결정은 신청인의 신청목적 및 데이터 활용방안을 고려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신청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목적 달성 시 이를 폐기하도록 한다.
 - 또한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 조정결과

- o 위와 같은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성립